# 2016년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16년 2월 25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하성근 위원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허 재 성 부총재보

서 영 경 부총재보 이 흥 모 부총재보

김 민 호 부총재보 윤 면 식 부총재보

채 선 병 외자운용원장 조 정 환 금융안정국장

장 민 조사국장 허 진 호 통화정책국장

신 호 순 금융시장국장 박 이 락 금융결제국장

홍 승 제 국제국장 이 환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서 봉 국 공보관 박 철 원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7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

<의안 제8호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이 의안 제7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 그리고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의안 제8호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결정」을 일괄 상정하였음.

담당 부총재보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이어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두 차례 위원협의회에서 이미 논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관련부서에서 의안 제8호와 함께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는 본 안건들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위원들은 이번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방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였으며, 금 번 확대 조치가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은행의 신규대출 취급 을 유도하고 청년고용 창출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순증액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무역금융의 새로운 지원방식에 따라 수출기업에 대한 은행의 무역금융 신규취급이 늘어나고,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일반창업기업을 지원함에 따라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요건을 단순화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지원대상 대출취급에 적극적인 은행에 부여하는 인센티브(incentive)를 강화하는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그동안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운영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고 무역금융 프로그램 등에서 규제적 요소를 완화하는 한편, 은행에 주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관련부서는 동 논의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현재의 20조원에서 5조원 늘린 25조원으로 증액하여 2016년 5월 1일부터 적용하고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한도를 3조원 증액한 4.5조원으로, 창업지원 한도를 1조원 증액한 6조원으로, 설비투자지원 한도를 1조원 증액한 8조원으로 각각 정하되, 여타 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은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이번 한도 확대의 기본방향에 대해 동의하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고 동 한도의 추가확대 여지에 대해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발권력을 활용한 통화신용정책 수단이므로 그 한도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금융경제상황 및 당행 수지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운용해 오고 있다고 답변하고, 이번 한도조정도 그간의 미소진 여유한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을 모색한 뒤 결정한 것이라고 첨언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규정과 세칙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측면이 있는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명칭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가급적 대출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금융 등 금융중개 지원대출 규정들을 공급자 입장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개정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성장세 회복이 약화된 상황에서 투자 및 고용을 좀 더빨리 촉진하고자하는 취지로 이번 한도증액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시행일을 5월 1일에서 3월 1일로 앞당기자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일부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전산 작업 등의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하여 시행일을 당초 5월 1일로 하였으나 무역금융은 즉시 시행할 수 있으므로 3월 1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 (3) 심의결과

의안 제7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 수정가결

##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생략)

의안 제8호-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결정 수정가결

#### 의결사항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현재의 20.0조원에서 5.0조원 증액하여 25.0조원으로 정한다. 이에 따른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1.5조원에서 3.0조원 증액한 4.5조 원으로 한다.

창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5.0조원에서 1.0조원 증액한 6.0조원으로 한다.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7.0조원에서 1.0조원 증액한 8.0조원으로 한다.

여타 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은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

#### <의안 제11호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 제10호 및 제81조에 의거하여 차 액결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IMF-World Bank 의 FSAP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한은금융망의 결제완결성 명시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그동안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전자금융 공동망을 통한 기업 및 개인의 거액자금 이체를 한은 금융망으로 실시간 처리할 경우 은행의 유동성 관리부담이 증가하지 않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보유수준 및 일중당좌대출 이용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유동성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는「통합도산법」및「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의해 결제완결성이 보장되고 있는데, 그동안 한은금융망의 결제 완결성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의 발생사례 및 금번 규정개정의 의미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한은금융망의 결제완결성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전

혀 없으며, 금번 규정개정은 2013년도에 실시된 IMF와 World Bank의 FSAP 평가 단이 법에 명시된 결제완결성의 정확한 시점을 관련규정에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간 연계결제 시스템 구축 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연계결제와 관련하여 신규 전산장비의 도입이 없었고 관련 프로그램도 당행 직원이 직접 개발하여 시스템 구축비용은 매우 적은 수준 이라고 답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여러 보안 방안에도 불구하고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납입비율을 상향조정하면 은행들의 담보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연계결제 등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중당좌대출 담보와 차액결제 담보의 상호활용 등 추가적인 담보 완화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담보부담 완화 효과를 감안하여 담보 납입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생략)